

## 13.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1999-29호 1999. 3. 11.

### 개정취지

전문개정된 법인세법개정법률(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맞추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문체계를 전면재편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내용연수를 조정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취득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감가상각제도의 통합에 따라 통합내용연수를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체계로 단일화하되, 업종별 자산에 대하여 업종별로 4년, 6년, 8년, 10년, 16년으로 되어있던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5년, 8년, 10년 12년, 20년으로 연장조정하고, 공통자산 및 임대용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일화함.
- 나. 나대지 등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
- 다. 법인의 공동경비중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은 광고선전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비율에 의하고,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액비율에 의하도록 하되, 당해 법인의 매출액비율이 1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라. 법인간 합병시 일정 요건하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을 위한 구분 경리는 사업별로 구분경리하거나 사업장 별로 구분경리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마.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를 추가함.
- 바. 지출액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 함.
- 사. 법인이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간이파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등을 추가함.

주택회보